

#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입주자모집공고(정정)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6.04.24.(금) 공고한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2026.04.29.(수)) 합니다.

■ 변경 내용 1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의 "동별 라인별"에 대한 표기오류)

· 변경사유 : 동별 라인별 표기오류 정정

[변경 전]

- 105동 1, 3호 라인 / 공급 세대 수 : 30세대 / 분양가 : 457,000,000원

[변경 후]

- 105동 1호 라인 / 공급 세대 수 : 30세대 / 분양가 457,000,000원

105동 3호 라인 / 공급 세대 수 : 49세대 / 분양가 443,500,000원

[변경 전]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5%)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7차(5%)		
										(2026.09.15)	(2027.03.15)	(2027.08.16)	(2028.02.15)	(2028.06.15)	(2028.11.15)	(2028.12.15)		
84A	103동 4호 111동 4호	11-20층	5	46,719,840	399,080,160	-	445,800,000	10,000,000	12,29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22,290,000	133,740,000	
	104동 1호 105동 1,3호 106동 1호		30	47,893,600	409,106,400	-	457,000,000	10,000,000	12,85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22,850,000	137,100,000	
	104동 3,4호 106동 2,3호 108동 4호		49	46,478,800	397,021,200	-	443,500,000	10,000,000	12,175,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22,175,000	133,050,000	

[변경 후]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5%)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7차(5%)		
										(2026.09.15)	(2027.03.15)	(2027.08.16)	(2028.02.15)	(2028.06.15)	(2028.11.15)	(2028.12.15)		
84A	103동 4호 111동 4호	11-20층	5	46,719,840	399,080,160	-	445,800,000	10,000,000	12,29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22,290,000	133,740,000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30	47,893,600	409,106,400	-	457,000,000	10,000,000	12,85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22,850,000	137,100,000	
	104동 3,4호 105동 3호 106동 2,3호 108동 4호		49	46,478,800	397,021,200	-	443,500,000	10,000,000	12,175,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22,175,000	133,050,000	

※ 기 공고된 내용 중 일부 표기오류 사항을 위와 같이 정정함.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천안시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24.(금)	2026.05.04.(월)	2026.05.06.(수)	2026.05.07.(목)	2026.05.13.(수)	2026.05.14.(목) ~ 05.17.(일)[4일간]	2026.05.26.(화) ~ 05.28.(목)[3일간]

## 1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b> 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천안동문디이스트파크시티.com](http://www.천안동문디이스트파크시티.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 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04.(월)	2026.05.06.(수)	2026.05.07.(목)	2026.05.13.(수)	2026.05.14.(목)~05.17.(일)[4일간]	2026.05.26.(화)~05.28.(목)[3일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li> <li>■(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li> <li>■(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절 업무 시간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남도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동주택과 - 18000호 (2026.04.24.) 및 천안시 공동주택과-18788호 (2026.04.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76-5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1~29층 11개동 총 1,051세대 중 조합원 551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09세대(기관추천 30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88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3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96	01	059.9018A	59A	59.9018	21.7835	81.6853	39.7809	121.4662	35.5322	14	-	1	3	-	1	5	9	5
	02	059.9659B	59B	59.9659	22.5566	82.5225	39.8235	122.3460	35.5702	3	-	-	-	-	-	-	3	1
	03	074.9271A	74A	74.9271	25.4657	100.3928	49.7593	150.1521	44.4448	25	-	2	5	-	2	9	16	6
	04	074.9536B	74B	74.9536	26.3413	101.2949	49.7769	151.0718	44.4605	18	-	1	4	-	1	6	12	2
	05	084.9911A	84A	84.9911	28.4017	113.3928	56.4428	169.8356	50.4145	229	20	22	52	6	20	120	109	12
	06	084.9755B	84B	84.9755	29.4270	114.4025	56.4325	170.8350	50.4052	108	10	10	24	3	9	56	52	5
	07	105.9965	105	105.9965	34.6001	140.5966	70.3926	210.9892	62.8743	103	-	10	-	3	-	13	90	4
합계										500	30	46	88	12	33	209	291	35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하부 비주거층이 있을 경우, 비주거층 또는 PIT층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공고상/청약시)	059.9018A	059.9659B	074.9271A	074.9536B	084.9911A	084.9755B	105.9965
약식표기 (견본주택 등)	59A	59B	74A	74B	84A	84B	105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표기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혼동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5%)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7차(5%)	
										(2026.09.15)	(2027.03.15)	(2027.08.16)	(2028.02.15)	(2028.06.15)	(2028.11.15)	(2028.12.15)	
입주지정일																	

59A	109동 4호	4층	1	33,074,880	282,525,120	-	315,600,000	10,000,000	5,780,000	31,560,000	31,560,000	31,560,000	31,560,000	31,560,000	31,560,000	15,780,000	94,680,000
	109동 1호	11-20층	1	34,772,640	297,027,360	-	331,800,000	10,000,000	6,590,000	33,180,000	33,180,000	33,180,000	33,180,000	33,180,000	33,180,000	16,590,000	99,540,000
	110동 3,4호 111동 2호		3	33,923,760	289,776,240	-	323,700,000	10,000,000	6,185,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32,370,000	16,185,000	97,110,000
	109동 1호	21층이상	1	35,275,680	301,324,320	-	336,600,000	10,000,000	6,83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16,830,000	100,980,000
	109동 4호		1	34,426,800	294,073,200	-	328,500,000	10,000,000	6,425,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16,425,000	98,550,000
	109동 2호	최상층	1	44,246,560	377,953,440	-	422,200,000	10,000,000	11,11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42,220,000	21,110,000	126,660,000
	109동 4호 110동 2,3,4호		4	43,397,680	370,702,320	-	414,100,000	10,000,000	10,705,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20,705,000	124,230,000
	111동 1,2호		2	43,230,000	369,270,000	-	412,500,000	10,000,000	10,625,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20,625,000	123,750,000
59B	110동 1호	2층	1	31,167,520	266,232,480	-	297,400,000	10,000,000	4,870,000	29,740,000	29,740,000	29,740,000	29,740,000	29,740,000	29,740,000	14,870,000	89,220,000
	109동 3호 110동 1호	최상층	2	43,837,840	374,462,160	-	418,300,000	10,000,000	10,915,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41,830,000	20,915,000	125,490,000
74A	101동 1호 103동 1호	2층	2	38,325,360	327,374,640	-	365,700,000	10,000,000	8,285,000	36,570,000	36,570,000	36,570,000	36,570,000	36,570,000	36,570,000	18,285,000	109,710,000
	102동 3호		1	38,534,960	329,165,040	-	367,700,000	10,000,000	8,385,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18,385,000	110,310,000
	102동 1호	3층	1	39,153,280	334,446,720	-	373,600,000	10,000,000	8,680,000	37,360,000	37,360,000	37,360,000	37,360,000	37,360,000	37,360,000	18,680,000	112,080,000
	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1호	5-10층	3	40,819,600	348,680,400	-	389,500,000	10,000,000	9,475,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19,475,000	116,850,000
	102동 3호		1	41,029,200	350,470,800	-	391,500,000	10,000,000	9,575,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19,575,000	117,450,000
	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2호	11-20층	6	41,238,800	352,261,200	-	393,500,000	10,000,000	9,675,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19,675,000	118,050,000
	101동 3호		1	41,448,400	354,051,600	-	395,500,000	10,000,000	9,775,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19,775,000	118,650,000
	101동 1호 102동 1호	21층이상	4	41,857,120	357,542,880	-	399,400,000	10,000,000	9,970,000	39,940,000	39,940,000	39,940,000	39,940,000	39,940,000	39,940,000	19,970,000	119,820,000
	101동 3호		1	42,066,720	359,333,280	-	401,400,000	10,000,000	10,07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20,070,000	120,420,000
	101동 1호 103동 1호 103동 2호	최상층	3	52,882,080	451,717,920	-	504,600,000	10,000,000	15,23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50,460,000	25,230,000	151,380,000
101동 3호 102동 3호	2		53,081,200	453,418,800	-	506,500,000	10,000,000	15,325,000	50,650,000	50,650,000	50,650,000	50,650,000	50,650,000	50,650,000	25,325,000	151,950,000	
74B	101동 2호 102동 2호	4층	2	40,557,600	346,442,400	-	387,000,000	10,000,000	9,35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9,350,000	116,100,000
	101동 2호	5-10층	5	41,186,400	351,813,600	-	393,000,000	10,000,000	9,65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9,650,000	117,900,000
	101동 2호 102동 2호	11-20층	6	41,605,600	355,394,400	-	397,000,000	10,000,000	9,85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9,850,000	119,100,000
	101동 2호 102동 2호	21층이상	3	42,234,400	360,765,600	-	403,000,000	10,000,000	10,15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20,150,000	120,900,000
	101동 2호 102동 2호	최상층	2	53,353,680	455,746,320	-	509,100,000	10,000,000	15,455,000	50,910,000	50,910,000	50,910,000	50,910,000	50,910,000	50,910,000	25,455,000	152,730,000
84A	104동 1호	2층	1	41,322,640	352,977,360	-	394,300,000	10,000,000	9,715,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19,715,000	118,290,000
	104동 3호 104동 4호		5	43,198,560	369,001,440	-	412,200,000	10,000,000	10,61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20,610,000	123,660,000

84B	105동 3호 106동 2,3호	3층	1	44,602,880	380,997,120	-	425,600,000	10,000,000	11,28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21,280,000	127,680,000
	106동 1호		1	43,135,680	368,464,320	-	411,600,000	10,000,000	10,58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20,580,000	123,480,000
	108동 1호	3층	2	42,726,960	364,973,040	-	407,700,000	10,000,000	10,385,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20,385,000	122,310,000
	104동 1호 105동 1호		5	44,131,280	376,968,720	-	421,100,000	10,000,000	11,055,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21,055,000	126,330,000
	104동 3,4호 105동 3호 106동 2,3호		1	45,546,080	389,053,920	-	434,600,000	10,000,000	11,73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21,730,000	130,380,000
	106동 1호	4층	1	45,546,080	389,053,920	-	434,600,000	10,000,000	11,73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21,730,000	130,380,000
	103동 4호		2	43,900,720	374,999,280	-	418,900,000	10,000,000	10,945,000	41,890,000	41,890,000	41,890,000	41,890,000	41,890,000	41,890,000	20,945,000	125,670,000
	104동 1호 105동 1호		6	45,305,040	386,994,960	-	432,300,000	10,000,000	11,615,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21,615,000	129,690,000
	104동 3,4호 105동 3호 106동 2,3호 108동 4호		1	46,719,840	399,080,160	-	445,800,000	10,000,000	12,29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22,290,000	133,740,000
	106동 1호	5-10층	5	46,248,240	395,051,760	-	441,300,000	10,000,000	12,065,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22,065,000	132,390,000
	103동 4호 111동 4호		18	47,422,000	405,078,000	-	452,500,000	10,000,000	12,625,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22,625,000	135,750,000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31	46,017,680	393,082,320	-	439,100,000	10,000,000	11,955,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21,955,000	131,730,000
	104동 3,4호 105동 3호 106동 2,3호 108동 4호	11-20층	5	46,719,840	399,080,160	-	445,800,000	10,000,000	12,29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22,290,000	133,740,000
	103동 4호 111동 4호		30	47,893,600	409,106,400	-	457,000,000	10,000,000	12,85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22,850,000	137,100,000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49	46,478,800	397,021,200	-	443,500,000	10,000,000	12,175,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22,175,000	133,050,000
	104동 3,4호 105동 3호 106동 2,3호 108동 4호	21층이상	1	47,422,000	405,078,000	-	452,500,000	10,000,000	12,625,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22,625,000	135,750,000
	103동 4호		24	48,595,760	415,104,240	-	463,700,000	10,000,000	13,185,000	46,370,000	46,370,000	46,370,000	46,370,000	46,370,000	46,370,000	23,185,000	139,110,000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29	47,191,440	403,108,560	-	450,300,000	10,000,000	12,515,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22,515,000	135,090,000
	104동 3,4호 105동 3호 106동 2,3호 108동 4호	최상층	1	59,861,760	511,338,240	-	571,200,000	10,000,000	18,56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28,560,000	171,360,000
	103동 4호		4	61,046,000	521,454,000	-	582,500,000	10,000,000	19,125,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29,125,000	174,750,000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108동 1호		6	59,631,200	509,368,800	-	569,000,000	10,000,000	18,45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28,450,000	170,700,000
104동 3,4호 105동 3호 106동 2,3호 108동 4호	2층	1	41,689,440	356,110,560	-	397,800,000	10,000,000	9,89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19,890,000	119,340,000	
103동 4호		4	61,046,000	521,454,000	-	582,500,000	10,000,000	19,125,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29,125,000	174,750,000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108동 1호		6	59,631,200	509,368,800	-	569,000,000	10,000,000	18,45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28,450,000	170,700,000	
84B	104동 2호	2층	1	41,689,440	356,110,560	-	397,800,000	10,000,000	9,89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19,890,000	119,340,000	

105 106동	2호	2	43,586,320	372,313,680	-	415,900,000	10,000,000	10,795,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20,795,000	124,770,000
	4호		43,816,880	374,283,120	-	418,100,000	10,000,000	10,905,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20,905,000	125,430,000
	111동	3호	1	44,770,560	382,429,440	-	427,200,000	10,000,000	11,360,000	42,720,000	42,720,000	42,720,000	42,720,000	42,720,000	42,720,000	21,360,000	128,160,000
	103동	2호	3층	43,104,240	368,195,760	-	411,300,000	10,000,000	10,565,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20,565,000	123,390,000
	106동	4호		44,529,520	380,370,480	-	424,900,000	10,000,000	11,245,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21,245,000	127,470,000
	103동	3호	4층	45,954,800	392,545,200	-	438,500,000	10,000,000	11,925,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21,925,000	131,550,000
	104동	2호		44,288,480	378,311,520	-	422,600,000	10,000,000	11,130,000	42,260,000	42,260,000	42,260,000	42,260,000	42,260,000	42,260,000	21,130,000	126,780,000
	105동	2호		45,713,760	390,486,240	-	436,200,000	10,000,000	11,81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21,810,000	130,860,000
	103동	3호	5-10층	46,656,960	398,543,040	-	445,200,000	10,000,000	12,26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22,260,000	133,560,000
	104동	2호		47,841,200	408,658,800	-	456,500,000	10,000,000	12,825,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22,825,000	136,950,000
	105동	2호		46,426,400	396,573,600	-	443,000,000	10,000,000	12,15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22,150,000	132,900,000
	103동	3호	11-20층	47,139,040	402,660,960	-	449,800,000	10,000,000	12,49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22,490,000	134,940,000
	104동	2호		48,323,280	412,776,720	-	461,100,000	10,000,000	13,055,000	46,110,000	46,110,000	46,110,000	46,110,000	46,110,000	46,110,000	23,055,000	138,330,000
	105동	2호		46,898,000	400,602,000	-	447,500,000	10,000,000	12,375,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22,375,000	134,250,000
	104동	2호	21층이상	49,025,440	418,774,560	-	467,800,000	10,000,000	13,39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23,390,000	140,340,000
	105동	2호		47,610,640	406,689,360	-	454,300,000	10,000,000	12,715,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22,715,000	136,290,000
	111동	3호		47,841,200	408,658,800	-	456,500,000	10,000,000	12,825,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45,650,000	22,825,000	136,950,000
	103동	3호	최상층	60,396,240	515,903,760	-	576,300,000	10,000,000	18,815,000	57,630,000	57,630,000	57,630,000	57,630,000	57,630,000	57,630,000	28,815,000	172,890,000
	104동	2호		61,580,480	526,019,520	-	587,600,000	10,000,000	19,38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29,380,000	176,280,000
105동	2호	60,165,680		513,934,320	-	574,100,000	10,000,000	18,705,000	57,410,000	57,410,000	57,410,000	57,410,000	57,410,000	57,410,000	28,705,000	172,230,000	
105	107동 1,2,3,4호	2층	4	55,533,520	431,242,255	43,124,225	529,900,000	10,000,000	16,495,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26,495,000	158,970,000
		3층	4	56,822,560	441,252,218	44,125,222	542,200,000	10,000,000	17,110,000	54,220,000	54,220,000	54,220,000	54,220,000	54,220,000	54,220,000	27,110,000	162,660,000
		4층	4	58,279,280	452,564,291	45,256,429	556,100,000	10,000,000	17,805,000	55,610,000	55,610,000	55,610,000	55,610,000	55,610,000	55,610,000	27,805,000	166,830,000
		5-10층	24	59,149,120	459,318,982	45,931,898	564,400,000	10,000,000	18,22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56,440,000	28,220,000	169,320,000
		11-20층	35	59,736,000	463,876,364	46,387,636	570,000,000	10,000,000	18,5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28,500,000	171,000,000
		21층이상	31	60,605,840	470,631,055	47,063,105	578,300,000	10,000,000	18,915,000	57,830,000	57,830,000	57,830,000	57,830,000	57,830,000	57,830,000	28,915,000	173,490,000
	107동	4호	최상층	1	76,032,400	590,425,091	59,042,509	725,500,000	10,000,000	26,275,000	72,550,000	72,550,000	72,550,000	72,550,000	72,550,000	36,275,000	217,65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은 총 분양대금의 65%이며 60%는 이자후불제 대출, 5%는 직접 납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1차, 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됨)
-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 축소·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은 정산 없음)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잔금 납부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 입주 예정일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 예정일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 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84A	84B	105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	-	2	1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2	1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2	1	-	3
	장애인	-	-	-	-	8	4	-	12
	중소기업 근로자	-	-	-	-	6	3	-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	2	1	22	10	10	46	
신혼부부 특별공급	3	-	5	4	52	24	-	88	
생애최초 특별공급	1	-	2	1	20	9	-	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6	3	3	12	
합계	5	-	9	6	120	56	13	20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 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li> <li>-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li> <li>-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 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점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b>공급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 <li>※ <b>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b></li> </ul>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b>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b></li> </ul>			
<b>무주택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li> </ul>			
<b>청약통장 자격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o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ol> </li> </ul> </li> </ul>			
	<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 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li> </ul>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li> <li>■ ②배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b>해당시·도(충청남도)</b>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8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 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 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													

			<p>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4-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3세대

구분	내용
----	----

<b>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 <b>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b>1순위에 해당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b>6개월</b>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b>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b>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	--

<b>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b>①소득구분</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2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6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비고

-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b>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li> </ul> </li> </u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93 413 2101 694">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li>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3 1034 2101 1254">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 rowspan="2">40%</td> <td rowspan="2">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li> </ul> <p>-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data-bbox="293 1295 2101 1439">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3">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적용기준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p>: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li> <li>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li>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li> <li>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ol> </li> </ol> </li> </ol> <table border="1" data-bbox="255 1276 2040 1436">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7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안내

###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6.05.04.(월) (청약홈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li> <li>■ (현장접수) 건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li> <li>■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6.05.06.(수) 09:00~17:30		
	2순위	2026.05.07.(목)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b>공고단지 청약연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b>당첨자발표 서비스</b>	<b>청약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5.13.(수) ~ 2026.05.22(금)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b>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5.1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피밍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피밍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당첨자 발표 및 자격확인 구비서류 제출 일정

구분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자격확인 구비서류 제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 2026.05.13.(수)</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li> <li>■ 기간 : 2026.05.14.(목)~2026.05.17.(일) [4일간, 10:00 ~ 17:00]</li> <li>■ 방법 : 건본주택 방문접수</li> <li>■ 장소 : 건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li> <li>※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 (<a href="https://www.천안동문디에스트파크시티.com">https://www.천안동문디에스트파크시티.com</a>)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니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검증)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시·도 거주기간, 주택소유 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서류 미제출 및 미계약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며, 그 경우에도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인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신청자에게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는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 해당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함)
- ※ 소명자료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반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li> <li>※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li> <li>※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후 발급</li> </ul>
	○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본인과의 관계 확인</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li> <li>※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중 청약신청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현재 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li> <li>※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li> </ul>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청약 시 기본주택 현장방문 접수의 경우 제출 (정보취약계층에 한함)</li> <li>※ 인터넷 청약신청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li> <li>※ 발급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li> </ul>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세대)</li> <li>※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의 자녀(청약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li> </ul>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li> <li>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li> <li>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li> <li>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li> </ul> </li> </ul>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중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출산특례에 해당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의3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li> </ul> </li> </ul>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 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인정 안됨</li> <li>※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li> <li>※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 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li> </ul> </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현재 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li> <li>※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li> </ul> </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추천명부로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 시 생략</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 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li> <li>※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li> </ul> </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표시</li> </ul> </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li>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li> <li>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 fax 수신문서 제출 가능</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로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   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 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li> </ul>
		○	자산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 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표시</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li> <li>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li>* 아래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li> <li>※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li> <li>※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 fax 수신문서 제출 가능</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li> <li>*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li>※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로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li> <li>※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   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필수</li> <li>※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li> </ul>
	○		자산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li> <li>*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li> <li>※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 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li> <li>※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li> <l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표시</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li> <li>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현재 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li> <li>※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li>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인 미혼의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현재 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li> <li>※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당첨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현재 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개명 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li> <li>※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li> </ul> </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인 미혼의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현재 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개명 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li> <li>※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li> </ul> </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당첨사실 소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li> </ul> </li> <li>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와 관련한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대리인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li> </ul>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당첨자격 확인 서류제출 위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li> <li>※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후 발급</li> </ul> </li> </ul>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li> </ul>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고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소득증빙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소유증빙)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필수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②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③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①, 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중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을 받는 경우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영유아 및 미성년자 포함)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산가액(부동산가액)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 산정해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특례(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를 사용한 경우 해당주택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③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 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직인날인 필수)만 제출 가능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시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5.26.(화) ~ 2026.05.28.(목) [3일간]	10:00 ~ 16:00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건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신협	131-022-888051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PF금융지사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수납 불가)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분양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후 발급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분양계약자 부담분(수입인지 기준세액의 1/2) *세부사항 당사 홈페이지 참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건본주택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비 및 유상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요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계약으로 간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li> <li>※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후 발급</li> </ul>
○	신분증,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li> <li>※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거래신고 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시 :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납부세액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각각 50%)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li> <li>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 및 미계약 세대 발생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단,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li> <li>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현황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li> </ul>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li> </ul> </li> </ul>

	<p>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우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즉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기간(7일)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li> </ul> </li> <li>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입력),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분양일정 상 계약한 이후의 경우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및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li> <li>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 등에 따라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체결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ul> </li> </ul>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li> <li>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ol> </li> <li>부적격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약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li> </ul>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li> <li>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li> <li>「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li>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li> <li>영리목적 외국인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li> <li>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ul> </li> <li>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합니다.</li> <li>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li> </ul>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시행자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중도금 65% 중 대출은 60%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5%는 직접납부)
- 적격대출 시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 합산)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 제한,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시행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 제한 및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알선 시)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자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시행자 등은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행자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시행자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시행자 등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정보제공 미동의를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 등은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시행자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시행자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자에게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시행자는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 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10

##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진행되며, 계약 일정, 계약 내용, 납부 방법, 납부 계좌, 계약 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 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 이후 변경은 사업 주체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만 변경 가능하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시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타입	고객 부담 발코니 확장 공사비	비고
전타입(59A, 59B, 74A, 74B, 84A, 84B, 105)	무 상	-

※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계약체결은 없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무상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 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 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 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인접 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 구성상 플러스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안방)'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 제거 등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확장 비용은 외부 발코니 새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 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브랜드, 유리스펙, 표현문구 및 프레임,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일, 필름지 등의 마감재는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패턴,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수급 불가 시 동질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욕조, 현관디딤석, 욕실 뒷선반, 화장대 상판 등의 인조석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 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브랜드, 디자인, 패턴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 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 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및 일부 벽체의 돌출, 인접 세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 변경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 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

- ※ 플러스 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플러스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내용 플러스옵션	구분	주택형						비고		
			59A	59B	74A	74B	84A	84B		105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전층	1,540,000						1,650,000		
광폭강마루	광폭강마루 바닥재(거실, 주방, 침실, 팬트리)	기준층	660,000	550,000	660,000	660,000	770,000	770,000	990,000		
		최상층	990,000	990,000	1,210,000	1,210,000	1,320,000	1,320,000	1,760,000		
주방마감재	주방 세라믹타일(상판+벽체+아일랜드)	기준층	2,530,000	2,970,000	2,640,000	3,190,000	2,750,000	2,750,000	3,630,000		
		최상층	2,420,000	1,980,000							
주방특화	선택1	상부플랩장+수입하드웨어+상부장조명+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벽부형 악세서리+무광싱크수전+무선충전콘센트	기준층	3,740,000	5,500,000	3,960,000	5,610,000	4,070,000	5,060,000	-	※ 주방 마감재(세라믹타일)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최상층	4,730,000									
선택2	상부플랩장+수입하드웨어+상부장조명+독립형후드+사각싱크볼+벽부형 악세서리+무광싱크수전+무선충전콘센트+대형아일랜드	전층	-	-	-	-	-	-	6,600,000		

와이드주방	가전소물장/장식장+아일랜드형 식탁 연장+식탁 우물천장연장	기준층	-	-	3,410,000	-	4,620,000	-	-	※ 주방마감재(세라믹타일)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74A,84A)
		최상층	-	-	3,520,000	-	무상선택 가능	-	-	※ 84A 최상층 선택시 가전소물장/장식장 미제공
고급 통합형 팬트리	4슬라이딩도어 + 고급 판넬형 팬트리	전층	-	-	-	-	-	-	4,400,000	
대형드레스룸	1슬라이딩도어+ 벽 판넬 조명형 시스템가구	전층	2,420,000	1,320,000	2,530,000	2,420,000	2,970,000	2,860,000	-	드레스룸/파우더룸 통합형
	[알파룸 통합형 ] 1슬라이딩도어+ 벽 판넬 조명형 시스템가구 +아일랜드수납장 +고급 파우더장 및 수납장	전층	-	-	-	-	-	-	6,270,000	알파룸 통합형 드레스룸 (105만 선택가능)
침실2 불박이장	W1400 (59A/59B/74A/74B) W1700 (84A/84B/105)	전층	1,430,000				1,760,000			
침실3 불박이장	W1400 (59A/59B/74A/74B) W1700 (84A/84B/105)	전층	1,430,000				1,760,000			
세라믹타일 + 시트판넬	선택1	기준층	3,960,000	3,630,000	4,290,000	4,180,000	4,510,000	4,290,000	4,290,000	※ 옵션 선택에 따른 분류로 중복 선택 불가
		최상층	3,850,000	3,740,000			4,400,000			※ 복도1면,쇼파뒷벽 픽처레일 제공(1개소)
	선택2	기준층	-	-	4,290,000	-	4,290,000	-	4,070,000	※ 선택2은 74A/84A의 와이드주방 옵션 선택시 선택가능
		최상층	-	-	4,180,000	-	4,510,000	-		※ 선택2은 105의 고급 통합형 팬트리 옵션 선택시 선택가능
조명특화	선택1	전층	3,080,000	2,970,000	-	-	-	-	-	※ 59타입 선택 유무와 상관없이 주방 우물천장 미설치
	선택2	전층	-	-	4,620,000	4,620,000	4,840,000	4,950,000	5,830,000	※ 옵션 선택에 따른 분류로 중복 선택 불가
	선택3	전층	-	-	4,620,000	-	4,950,000	-	-	※ 선택3은 74A/84A 타입의 와이드주방 옵션 선택시 선택가능

공용욕실 특화	벽타일(600X1200)+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세면기+무광수전 +무광 욕실악세서리+욕실복합환풍기	전층	1,540,000							
부부욕실 특화	벽타일(600X1200)+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세면기+무광수전 +무광 욕실악세서리+샤워부스프레임무광흑니켈+욕실복합환풍기	전층	1,540,000						1,650,000	※ 105타입 세면기 옵션 제외
냉장고장 특화	냉장고 통합장 + 수납장	전층	-	-	1,650,000	1,430,000	1,650,000	1,320,000	2,200,000	※ 59타입 기본 통합장 제공
	냉장고 통합장 + 가전소물장 (74B/84B 선택가능)	전층	-	-	-	2,530,000	-	3,410,000	-	
공기청정시스템	전실	전층	1,320,000							미선택시 전열교환기 설치
주방TV	스마트주방TV(13인치)	전층	660,000							미선택시 기본형 미제공

### 플러스 옵션 유의사항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에 면한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세라믹타일+시트판넬 유상옵션 선택 시 타일이 설치되는 거실 및 복도구간은 조명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단천정 설치 시 타일의 시공 높이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 선택 시 거실 및 복도 단천정은 설치되지 않음.
-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색상과 입자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고, 가공 공법에 따라 평활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특화 옵션 및 와이드주방 옵션은 주방 마감재(세라믹타일)옵션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임.
- 주방상판, 벽체, 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유상옵션 세라믹타일은 제품 특성상 패턴,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음매가 발생되고 견본주택에 설치 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라믹타일+시트판넬 유상옵션 선택 시 복도벽 타일 설치부분 및 거실쇼파 뒷벽 천장에 픽처레일이 함께 제공 됨.
- 세라믹타일+시트판넬 설치부위는 와이드주방, 고급 통합형 팬트리 등 옵션 중복 선택 시 설치 위치 및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방특화 및 와이드주방 유상옵션선택과 무관하게 주방마감재(주방상판/벽체/아일랜드 세라믹타일) 유상옵션은 선택 가능함.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식탁우물천장 내 직간접 조명(디밍/색온도)이 설치되며, 주방특화 및 와이드주방(74A/84A) 유상옵션과 상관없이 선택 가능함. 59A/B 타입은 식탁우물천장 미설치로 직간접조명 옵션 없음.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침실 통합형스위치에 디밍/색온도 조절 버튼 및 간접등 스위치가 추가설치되며, 기본제공되는 스위치와 버튼 구성이 상이함.
- 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 마감재(세라믹타일 벽체) 길이가 연장 설치됩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시 제공되는 거실 우물천정 직간접조명, 주방 우물천정 직간접조명, 침실 직간접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직접등에만 적용되며, 간접등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 74A, 84A 와이드 주방 옵션 선택에 따라 주방 식탁 직부등의 개수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59A, 59B 타입은 주방 우물천장이 기본제공되지 않으므로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다른 타입과 다르게 주방 식탁우물천장 내 직간접 조명 옵션이 선택 불가함.
- 105타입의 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함께 제공되며, 옵션에 따라 아일랜드 식탁의 길이와 폭 및 하드웨어 등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을 확인바람.
- 침실1 대형 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시 판넬형 시스템가구에 면한 벽면의 벽지, 걸레받이, 천정몰딩은 시공되지 않음.
- 침실2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불박이장에 면한 바닥, 벽, 천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침실3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불박이장에 면한 바닥, 벽, 천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105타입 고급 통합형 팬트리 옵션 선택 시 판넬에 면한 바닥, 벽, 천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와이드 주방옵션 및 고급형 특화형 팬트리, 대형드레스룸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및 온도조절기 설치위치는 달라지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강마루 시공 패턴 및 나누기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님.
- 욕실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양변기, 세면기, 수전 외 악세서리 제품이 변경 설치되오니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욕실복합환풍기는 욕실특화 옵션 시 함께 제공되는 품목을 별도 선택이 불가함.
- 13인치 스마트주방 TV 유상옵션 품목으로 미 선택시 주방TV는 기본제공되지 않음.
- 공기청정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되는 전열교환 기계환기 시스템유닛은 제공되지 않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한 일체의 가전제품 선택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공기청정시스템, 주방TV 제외)
- 에어컨 냉매 배관은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만 시공되며, 건축물 내부 열교환시설 효율화를 위한 전용 관로의 사전공사가 추가로 시공되며 다만, 실제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 증설, 실외기 설치 및 배관 연결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 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 설치 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하자 및 문제는 입주자에게 귀속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공동구매 또는 개별 계약을 통해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는 준공 이후(입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 가능 여부 및 방식은 세대별 여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기종 또는 설치 방식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옵션 수납계좌	신협	131-022-888082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PF금융지사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0% (2027.08.16.)	잔금 80% (입주지정일)	플러스옵션 선택유무에 따른 납부금액은 계약자별로 상이합니다.

## 11

### 단지 여건 등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모든 공용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아파트 입주민과 공동 사용합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한 입주지연 시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시공 중 천재지변, 암반 발견,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대지 분할 등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차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실물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 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 단지 외부여건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옹벽,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나 수량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은 동별로 이용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높이, 옹벽 마감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인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일대에 천안시 위생매립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및 인근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단지 서측은 15m 신설도로와 인접하고있어, 서측 도로변에 위치한 101,102,103,110,111동 일부세대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도로경사로 인해 단지외-14.7~-5m 단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단지 경계 일부구간 110,111동 서측에는 옹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서측 15m 도로 건너편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계획중이며, 이로인해 15m 도로와 일부구간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발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은 10m 신설도로와 인접하고있어, 남측 도로변에 위치한 109,110동 일부세대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도로경사로 인해 단지 내 보차도로도 경사도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단지 북측은 25m도로 및 천안야구장과 인접하고있어, 북측 도로변에 위치한 103,104동 일부세대에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도로경사로 인해 단지 지상층과 약-14.7~-6m 단차가 발생합니다.
- 단지 동측은 말망산(약183m)과 인접하고 있으며, 단지 지상층과 약 -2~+11m 단차가 발생되어, 일부구간에는 옹벽 또는 조경석쌓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동남측(107,108동 전면)으로 기반시설인 문화공원(예정)이 인접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중로 및 남측 소로 도로는 일부구간만 개설예정임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서측 국도1호선 도로사업(천안 목천~삼룡 도로건설공사) 확장공사 예정에 따라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공용부/단지 내 환경

- 본 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동별로 상이함),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환기구) 등 크기는 변동될 수 있음)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학원 차량 대기 장소 및 외부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일부 구간은 석재 및 뽕칠, 도장마감이며, 외벽 면의 기본 마감은 페인트로 시공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 간 거리, 세대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 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키즈스테이션(통학차량대기실), 어린이집/경로당,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108동 4호, 109동 2호, 111동 4호 세대 1층 필로티는 소방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통행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보행자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101,111동 사이에 위치한 주출입구는 단지 지상층과 약 -11.5m의 레벨차가 있으며, 주출입구 좌측 옥외엘리베이터, 우측 외부계단을 통해 지상층으로 보행자의 접근가능하며, 지하3층 주차장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출입구와 인접한 101,111동 일부세대는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피해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103,104동 사이에 위치한 부출입구는 단지와 약 -6m의 레벨차가 있으며, 부출입구 우측 옥외엘리베이터, 좌측 외부계단을 통해 지상층으로 접근 가능하며, 지하2층 주차장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부출입구와 인접한 103,104동 일부세대는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피해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427대, 지상 근린생활시설 19대, 총 1,446대(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 및 통로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이 가능하며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소형택배차의 경우라도 주차구간(약 2.1m 이상)에 주차는 불가합니다. 택배차량은 주출입구를 통해 지하3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3층 동별 1개소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무인택배보관함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무인택배함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될 예정입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에는 키즈스테이션(통학차량대기실)이 위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통행,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회차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의 경광등, 소음, 매연, 전조 등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6동 2,3호, 108동 1호 세대 사이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코인세탁실 등)이 위치하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106,108동 저층부 세대는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8동 4호세대 지하1층, 110동 3,4호 세대 지하2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며 이와 인접한 108,110동 저층부 세대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3호, 102동 2호세대 사이 1층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하며, 103동 1,2호 세대 전면(동남측)으로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인근에 배치된 101,102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 4호세대 1층에는 경로당이 위치하여 인근에 배치된 106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2호 세대 1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위치하며 101,106,108,111동 사이에는 중앙광장 및 수경시설, 물놀이장이 위치하여 인근에 배치된 저층부 세대는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105동 동측으로 벽천 및 연못 휴게공간,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측으로는 어린이 물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인근에 배치된 102,103,104,105동 저층부 세대는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5,106,107,109동 동측 측벽 및 전체동 코아층 지붕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배면 북서측으로 텃밭 및 주민운동시설, 멀티코트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105,106동 저층부 세대는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106,109동 지하3층에는 우수저류조, 104,110동 지하2층에는 영구저류조, 107,108동 지하1층에는 지열 기계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11동 1호세대 측 지하3층에는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위치하여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5,106,109동 지하 3층에는 저수조, 기계실이 위치하여, 급배기를 위한 D.A창호가 동측 단지경계부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단차발생으로 인한 외부계단(실) 및 외부 엘리베이터가 110동,111동 사이, 101동,111동 사이, 103동,104동 사이, 106동,108동 사이에 설치되며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1층 필로티(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2,3호, 104동 2,3호, 105동 1,2호, 106동 1,3호, 107동 2,4호, 108동 2,3호, 109동 1,4호, 110동 2,4호, 111동 1,3호)내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일부 시설물의 위치 및 수량,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지하2층-급속5대, 완속56대 / 지하3층-급속13대, 완속51대 총 125대)는 단지 지하2,3층 주차장에 위치하며, 본 공사 시 일부 시설물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최상층 다락 지붕은 징크판넬로 마감되어 우천 시 빗물 소리가 다소 크게 들릴 수 있으며, 지붕 경사면을 따라 빗물받이가 설치되므로 이점을 필히 확인 바라며, 이로 인한 최상층 세대 및 인근 세대는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에는 다락 및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에 계단설치 및 테라스 설치로 인하여 같은 타입이라도 평면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와 다락 천장고는 본 공사 시 단열재 설치에 따른 마감 시공 오차, 구조 관련 사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및 테라스 공간으로 인해 아파트 옥상공간의 일부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및 테라스는 해당 입주자가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이에 동의하며, 최상층 세대의 입주자는 해당 다락 및 테라스에 대하여 소요 면적을 등기부상 등재 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테라스 사용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및 사생활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다락의 계단의 위치, 형태, 단높이, 단넓이, 단폭, 가구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다락의 일부 구간은 다락의 천정고 높이 확보를 위해 사용이 불가한 부분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및 마감사양(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시설물 (문주, DA(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 비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협약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시설은 동별로 이용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배면으로 실외기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인접 동(102동,103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고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용(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배기시설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근접 동(105동,106동,108동)세대는 미관, 소음, 바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의 지상 돌출물이 각 동 계단 또는 지상층 필로티 내부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카드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권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부에는 제연을 위한 DA가 설치되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 및 DA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 구간,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호수별 최고 층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라인이라도 층별 공용홀의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창호가 설치되는 경우 창호크기가 협소하거나 창호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개폐가 불가한 창호로 시공됩니다. 단, 일부 층에 한하여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시공됩니다.
- 각 세대의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수목의 높이 및 직경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 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 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 출입구, 지하 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 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 및 동호수 사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 블록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술 장식품 설치의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외부 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술 장식품 설치의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미설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및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 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다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 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입면 몰딩 및 일부 구간 석재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벽 및 옥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눈부심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부에 지하주차장 급배기를 위한 D/A가 설치되며, 이로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등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기타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 평면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상,하부 교차 설치되며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물건 적치를 금지하며 항상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

- 부에는 기계환기 유니트가 흡수층, 짝수층 교차되어 설치됩니다.
- 세대 실외기실 내부 우수용 PVC 배관이 노출 시공 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 기구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고정형 가구(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으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 시에는 수시로 세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PVC재질로 설치되고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프레임사이즈, 손잡이, 색상 등)등은 본 공사 시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비내력 벽체는 실별에 따라 습식, 건식 또는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 배관 및 냉매 배관(드레인포함)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 상판, 벽체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제품의 특성상 상판 및 벽체는 접합부에 조인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색상 및 재질 변경 없음, 등급 이상 적용) 공장 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내/외부)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샤워부스 바닥 및 욕조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 배관 일부가 주방 벽면 및 주방 상부장 상단에 노출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일부를 사용하여 주방과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인 삼릉동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에서 별도 진행하는 가전제품 중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배관과 가스쿡탑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가스배관은 다용도실(발코니2)에 설치된 가스계량기까지만 설치됩니다.
- 발코니2 2단선반은 본공사 시 가스계량기 위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욕실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용도실 천정에는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1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견본주택 설치 위치)에 시공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욕실,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금속 도어(현관 방화문, 실외기실도어,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 출입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색상,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 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호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하절기에는 상시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냉각수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높이, 색상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트리, 드레스룸 등 옵션 선택 사항에 따라 천정에 설치되는 조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작동 스위치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난간 형태 및 높이, 색상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휘트니스, 골프연습장(7타석), 탈의실(남/여), 샤워실(남/여), 독서실(남/여), 코인세탁실,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4호실), 키즈스테이션, 유아놀이터(1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주민운동시설(2개소), 중앙광장, 경비실(2개소), 용역원휴게실(남/여)
- 부대 복리시설은 관계 법령(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 복리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 및 운동기구, 가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 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게스트룸, 키즈스테이션(통학차량 대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경로당, 돌봄센터, 게스트룸,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102,103동 북서측 15m 도로 코너부에 근린생활시설(2개층) 2개동이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후면에는 근린생활시설 전용 지상주차(일반16면,경차2면,장애인1면)구간이 설치되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견본주택에서 설치된 모형 또는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북서측 코너부에는 도로와 약 -1.7m의 단차가 발생되며, 레벨차에 의한 계단이 형성되므로 견본주택에서 설치된 모형 또는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북동측 배면 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학교 및 국·공립어린이집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 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초등학교는 천안삼거리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나 인근 분양 및 착공 준비 중인 사업들이 모두 추진되거나 관련 계획변경, 급당인원 하향 조정 등에 따른 학생수용 여건 변화 발생 시에는 학교배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약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원활한 초등학교 통학을 위해 예정 입주일 이후 5년간 사업주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통학버스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공사와는 전혀 무관함으로 이에대한 민원, 비용 등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건본주택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오니,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소방감지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본주택 내 임시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인허가 도서 및 소방법 등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욕실점검구,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환기장비 및 디퓨저, 냉매매립박스, 위생기구류 등 규격 및 설치 위치는 변경 될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팟조명은 전사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타일, 필름지 등의 마감재와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패턴,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수급 불가 시 동질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본주택 건립 타입(84A,105)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세대 모형(59A, 59B, 74A, 74B, 84B)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모형의 주동 및 저층부의 입면의 색상, 형태, 조명 연출은 실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 주변 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저층부 외부 마감은 석재와 뿔칠, 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마감되며, 특화계획에 따라 입면의 디자인 및 마감자재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모형(59A, 59B, 74A, 74B, 84B)은 확장기본형 기준으로 설치되며 마감재, 유상옵션 관련 사항은 카다로그 및 분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브랜드, 유리스펙, 표현문구 및 프레임,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일괄 소등 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 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품목별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타입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계/전기분야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노출 배수 배관으로 인한 미관 지장 및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 우수 배수배관이 설치되어 우천 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전기 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노출 설치되오니 사전에 건본주택의 노출된 부위를 확인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소화기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공용부위 설비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공용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배관은 공배관으로 설치되며, 사용자가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 삽입 및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에는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별 기계 환기 방식이 적용되며, 옵션 선택 시 기계환기 장치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기계환기용 미세먼지 등 감지용 컨트롤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 및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 설치를 위한 실외기실이 별도 구획되어 있으나 사용자에게 따라 외부 조정 공간, 1층 또는 옥상 외부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 통신 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가. 단지내에 기간 통신 사업자의 이동 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나. 이동 통신 설비 설치 예정 위치
    1. 옥상층 : 102, 103, 106, 107, 108, 109, 111동
    2. 지상1층 : 106, 108, 109, 111동 주변화단
    3. 지하2층 : 헬룸-2, 11, 18

#### ■ 설계 관련 변경 사항

-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헬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 및 환기구(급/배기)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2 기타사항

입주자 사전 방문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3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 : 2029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원가 상승,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주민운동시설(옥내),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 단지내 부대시설물의 용도와 내부 시설물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및 설치될 예정이며, 그 결과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기타공용시설(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됩니다.
-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시설은 대관인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 시 각 동별로 계단실, E/V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와 동선의 편차가 있으므로 시설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 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천안 삼릉
2. 신 청 자 :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
3.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삼릉동 376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중격을 차단성능	★★
2. 중앙중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고층소음도로, 열외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외함시 급타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직침하량 허용부분	★
4. 수직침하량 허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질토, 성토량(양면기·층상기층 한 방 최소화)	★★★
4. 임초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온층층 보충을 위한 축열용량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적인 제품(EPO)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재검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표시성상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지수 이용	★★★
18. 일출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7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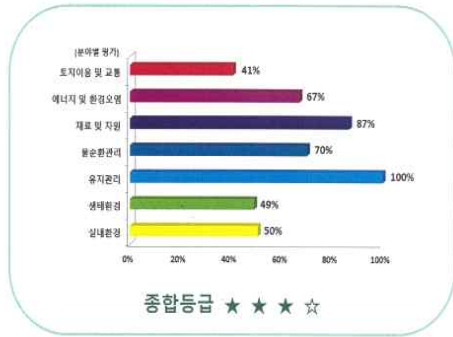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천안 삼릉	인증번호 : G-SEED-P-2024-0687-9
건축주 :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공공(예정)일 : 2027년 10월 31일	유효기간 : 2024. 07. 31.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삼릉동 376번지 일원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한 날까지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9층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연 면 적 : 169,558.1827㎡(평)면적 : 167,360.5582㎡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동우건축	환경부 고시 제2023-147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7월 31일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천안 삼릉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증번호 : 24-주-에-1-0116
공공연도 : 2027/01	평가자 : 별다른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릉동 376 일원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 수 : 지하3층/지상29층	평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187,360.5582(㎡)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동우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구분	에너지 사용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효율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m²·년)		
년별	0.0	0.0	0.0	0.0	0.0
년별	42.3	77.7	59.3	18.1	18.1
균형	36.7	34.2	25.3	7.0	7.0
조명	10.0	8.9	22.8	3.0	3.0
환기		2.5	7.0	1.2	1.2
합계	83.0	122.7	114.4	29.2	29.2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의 연료,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 V ]설비(외기(냉)난방설비)이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Ⅷ)으로 표기

구분	내진 능력
내진능력(MMI)	1등급, 내진설계능력(MMI진도:Ⅷ / 최대지반가속도 :0.173g)

지하주차장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주차장	2.7m	2.7m
지하2층 주차장	2.7m	2.7m
지하3층 주차장	2.7m	2.7m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비고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2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마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부가가치세 포함가)

구분	건축	전기	소방
감리회사	(주)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신일이앤씨	대평엔지니어링(주)
계약금액	4,150,599,200원	766,051,979원	764,357,400원

※ 정보통신 감리는 추후 계약예정입니다.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법인명	삼룡동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	동문건설 주식회사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2길 14-9, 3층(두정동, 세진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25, 8층 (하남빌딩)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419-71-00499	110111-036842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64,705,590,000	제 01222026-101-00007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홈페이지(www.천안동문디이스트파크시티.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 (☎ 1522-1183)

특별공급 청약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 05. 04(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2026. 05. 06(수)
	2순위 청약	2026. 05. 07(목)
당첨자 발표		2026. 05. 13(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		2026. 05. 14(목) ~ 2026. 05. 17(일)
정당계약		2026. 05. 26(화) ~ 2026. 05. 28(목)
총 1,051세대 중 일반분양 500세대 (전용 59㎡A/B, 74㎡A/B, 84㎡A/B, 105㎡)		분양문의 (☎ 1522-1183)

